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광주) 체력시험 장소 공고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광주) 체력시험 일정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광주광역시장

I. 시험일시 및 장소

□ 체력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시험기간 : 2021. 5. 17.(월) ~ 5. 20.(목) 09:00 ~ 18:00 / 3일간

※ 등록 마감시각(08:40 / 12:40)까지 등록 완료 (시간 초과 시 등록 절대 불가)

나. 시험장소 : 동림다목적체육관 ※ 덧붙임 4 시험장 안내 참조

다. 시험종목 : 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라. 시험대상 및 일정 : 총 208명 (필기시험 합격자)

1) 2021. 5. 17.(월) : 52명(경력경쟁)

시험 시간	조편성	인원	분야	응시번호
오후 13:00~18:00 (등록 12:40)	계	52명	경력채용	
	1조	10	구급_남	3110310003 ~ 3110310026
	2조	10	구급_남	3110310030 ~ 3110310051
			구조_남	3110810004 ~ 3110810008
	3조	10	구조_남	3110810009 ~ 3110810045
	4조	13	운전_남	3112510003 ~ 3112510038
	5조	9	관련학과_남	3111510003 ~ 3111510058

2) 2021. 5. 18.(화) : 81명(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 시간	조편성	인원	분야	응시번호
오전 09:00~12:00 (등록 08:40)	계	30명		
	1조	6	소방_남	3110110764 ~ 3110110797
	2조	6	소방_남	3110110799 ~ 3110110828
	3조	6	소방_남	3110110829 ~ 3110110869
	4조	6	소방_남	3110110870 ~ 3110110893
	5조	6	소방_남	3110110894 ~ 3110110918
오후 13:00~18:00 (등록 12:40)	계	51명		
	1조	9	소방_여	3110120003 ~ 3110120170
	2조	12	구급_여	3110320019 ~ 3110320104
			관련학과_여	3111520004 ~ 3111520007
	3조	10	소방_남	3110110530 ~ 3110110599
	4조	10	소방_남	3110110603 ~ 3110110678
	5조	10	소방_남	3110110683 ~ 3110110753

3) 2021. 5. 20.(목) : 75명(공개경쟁)

시험 시간	조편성	인원	분야	응시번호
오전 09:00~12:00 (등록 08:40)	계	30명		
	1조	6	소방_남	3110110265 ~ 3110110305
	2조	6	소방_남	3110110309 ~ 3110110361
	3조	6	소방_남	3110110370 ~ 3110110414
	4조	6	소방_남	3110110429 ~ 3110110493
	5조	6	소방_남	3110110496 ~ 3110110529
오후 13:00~18:00 (등록 12:40)	계	45명		
	1조	9	소방_남	3110110005 ~ 3110110030
	2조	9	소방_남	3110110039 ~ 3110110076
	3조	9	소방_남	3110110077 ~ 3110110135
	4조	9	소방_남	3110110138 ~ 3110110176
	5조	9	소방_남	3110110212 ~ 3110110258

다.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운동복***, 운동화****

* 응시표 출력 : 필기시험 응시표와 동일 (119고시 홈페이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모바일 신분증 제외)

*** 측정 센서에 영향을 주는 복장 착용 시 시험운영기관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징, 스파이크가 박힌 운동화 착용 불가

바. 별도시험 : 코로나19 자진신고시스템에 의한 사전 신청자

사. 응시방법 : 코로나19 자진신고시스템 접수(덧붙임5 참조) → 개별 안내

※ 자가격리자 체력시험 : 2021. 5.24.(월) 예정 /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확진자 체력시험 : 퇴원 기간을 고려하여 별도시험 예정 / 일정 별도 통보

□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21. 6. 15.(화) 14:00 ~

나. 공고방법 : 소방청 및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체력시험 합격기준>

◇ 6종목 평가점수 합산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합격

◇ 체력시험 합격하였어도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 나온 경우 합격취소(별도공고)

II. 도핑테스트 (도핑테스트 안내문 등은 덧붙임 2, 2-1, 2-2 참고)

가. 채취일시 : 체력시험 종료 후

나. 채취장소 : 체력시험장내 도핑실

다. 채취대상 : 10명 (체력시험 당일 응시대상자 중 5%를 추첨을 통한 무작위 선정)

라. 채취시료 : 소변 90ml 이상

마. 시료검사 : 시료 채취 후 봉인

바. 시료운송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금지약물 검사 의뢰

사. 동의서 징구 :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아. 이의제기 : 도핑테스트 분석결과가 비정상인 응시자의 경우 이의신청 기회부여

Ⅲ. 응시자 유의사항

- 체력시험 중 모든 종목에서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왕복오래달리기의 경우에만 마스크 벗는 것을 허용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는 덧붙임5 안내문에 따라 자진신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하기 위한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별도 시험을 시행하니 응시자 본인의 응시예정일 전일 24시까지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별도 시험일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 당일 발열 증상(37.5도 이상) 및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판단되는 응시자는 당일 마지막 순번으로 체력시험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장 환기 등 시험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우천, 강풍, 폭설 등에도 시험은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시험장소 등을 추가로 공지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시험장 물품 파손·훼손 등의 경우 수험생 본인 변상, 시험장은 금연지역으로 흡연 적발 시 법적조치 합니다.
- 체력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체력 시험 중 통신장비 소지자(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 체력시험 중에는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개인 준비운동을 충분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도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시험 운영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 및 용모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용모를 단정히 하고 시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 중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신발 등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장구(기구)만 사용가능합니다.
 - ※ 탄마가루는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 또한 금지
 - ※ 악력·배근력 종목에서는 시험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반코팅 장갑 사용 가능
-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 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시험 당일 응시자는 등록 후 배부되는 응시자 확인용 손목인식표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중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시험운영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촬영을 실시하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종목별 시험 종료 후 폐기합니다.
- 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 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 대리시험을 의뢰한 사람·응시한 사람 등 부정행위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력 시험 불합격자 중 도핑테스트 대상자로 선정된 응시자로 도핑 테스트에 불응한 사람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19고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행계획 공고(2021. 2. 24. 게시)’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시험관련 문의

- 문의처 :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 연락처 : (062) 613-8021

◆ 원서접수 사이트 관련(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등)

- 문의처 : 에스이코리아
- 연락처 : 053-474-1212

- 덧붙임
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 1-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2.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
 - 2-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 2-2.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4. 체력시험장 약도(동림다목적체육관) 1부.
 5.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안내문 1부.
 - 5-1.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1부.
 - 5-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5-3.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1부.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종 목	측정방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 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응시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응시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측정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 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체력시험 종목별 세부 평가 기준>

악력 (좌우 각 2회 측정)	파울 기준
	○ 악력기 또는 악력기를 잡은 팔이 몸의 일부에 닿았을 경우 ○ 바로 선 자세에서 신체의 일부(무릎, 허리, 팔꿈치)를 구부렸을 경우 ○ 상체가 기울어 악력기의 일부가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 악력기의 일부를 어깨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 두 손을 사용하거나 다른 한 손으로 측정하는 손을 접촉했을 경우
	운영 기준
	○ 악력기 측정값 진행 순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실시(최대 좌,우 2회) ○ 시험운영기관에서 제공된 물품 외 다른 보조장비 사용 불가

배근력 (2회 측정)	파울 기준
	○ 배근력기 손잡이 또는 잡은 손이 신체의 일부(허벅지, 무릎)에 닿을 경우 ○ 배근력기 발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면에서 떨어질 경우 ○ 신발이 발판 밖으로 나오는 경우
	운영 기준
	○ 쇄사슬이 꼬이거나 튕겨지는 경우 응시자 본인 귀책 사유임을 안내 ○ 손잡이를 잡는 위치는 까만 부분만 잡고 측정한 기록만 인정함.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2회 측정)	파울 기준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상체를 굽힐 경우 ○ 굽혔을 때 양손의 손가락 끝이 3초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 손바닥이 측정기구 레일에 닿았을 경우 ○ 두 손을 완전 포개어 중지 끝이 일치되지 않고 한 손으로만 민 경우
	운영 기준
	○ 측정 전 손톱을 확인 후 1cm 이상인 경우 손톱을 자르고 실시 ○ 측정 시 신발 착용 가능, 양말 착용 가능, 맨발 허용 ○ 왼손, 오른손 상관없이 한 손을 위로 올리고 다른 손을 포개어 실시 ○ 양 발 사이의 넓이가 5cm를 넘지 않고 굽히지 않는 상태에서 무릎고정 패드를 완전히 덮은 준비 상태를 만들어야 함.

제자리 멀리뛰기 (2회 측정)	파울 기준
	○ 점프 시 발구름라인(흰색 선)을 넘어서 뛰거나 이중점프를 할 경우
	○ 한쪽 발 또는 두 발이 멀리뛰기 AREA 밖에 착지한 경우
	○ 기기 밖으로 나갔으나 착지점보다 좌, 우, 뒤로 나갈 경우
	무효 기준
제자리 멀리뛰기 (2회 측정)	○ 착지 후 손을 짚거나 뒤로 넘어져서 몸의 일부가 닿는(뒷걸음질, 엉덩방아) 경우 그 기록을 인정하나, 그 값이 측정되지 않은 경우 무효 (측정 값보다 뒤로 몸이 닿은 경우는 그 기록을 인정해야하나, 측정이 되지않는 경우는 부득이 기계 오류로 재측정의 기회를 부여)
	○ 측정이 되지 않은 경우
	운영 기준
	○ 마른 형겔 등으로 출발지점 및 응시자 신발을 닦을 수 있도록 비치할 것.
	○ 영상 촬영은 응시자의 출발 라인에 발과 착지 지점의 모습 총 두 군데를 측정해야 함.

윗몸 일으키기 (1회 측정)	파울 기준
	○ X자 형태의 양팔이 가슴에서 떨어지거나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는 경우 1차 경고
	○ 재차(2차 이후) X자 형태의 양팔이 떨어지거나 풀릴 경우 해당 회차는 카운팅하지 않음(센서 값에서 측정요원이 계수기 파울 카운트 제외)
	운영 기준
	○ 카메라 센서 각도(90°) 운영
윗몸 일으키기 (1회 측정)	○ 등 센서 위치는 응시자의 어깨선과 일치
	○ 측정 전 센서 점검을 위해 개별 확인 시간 부여(10초)

왕복오래 달리기 (1회 측정)	측정 중지
	○ 규정된 신호음까지 두 발 모두 라인 안에 들어오지(착지) 못한 경우
	○ 출발신호가 울리기 이전에 출발한 경우
	운영 기준
	○ 응시자 간 간격을 1.5m 이상 유지
왕복오래 달리기 (1회 측정)	○ 두 발이 모두 들어오지 못하거나 먼저 출발하는 경우 그 전까지의 기록만 인정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2-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금지약물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 ▶pentazocine ▶pethidine

□ 금지방법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치 료 목 적 사 용 면 책 신 청 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 남 ☐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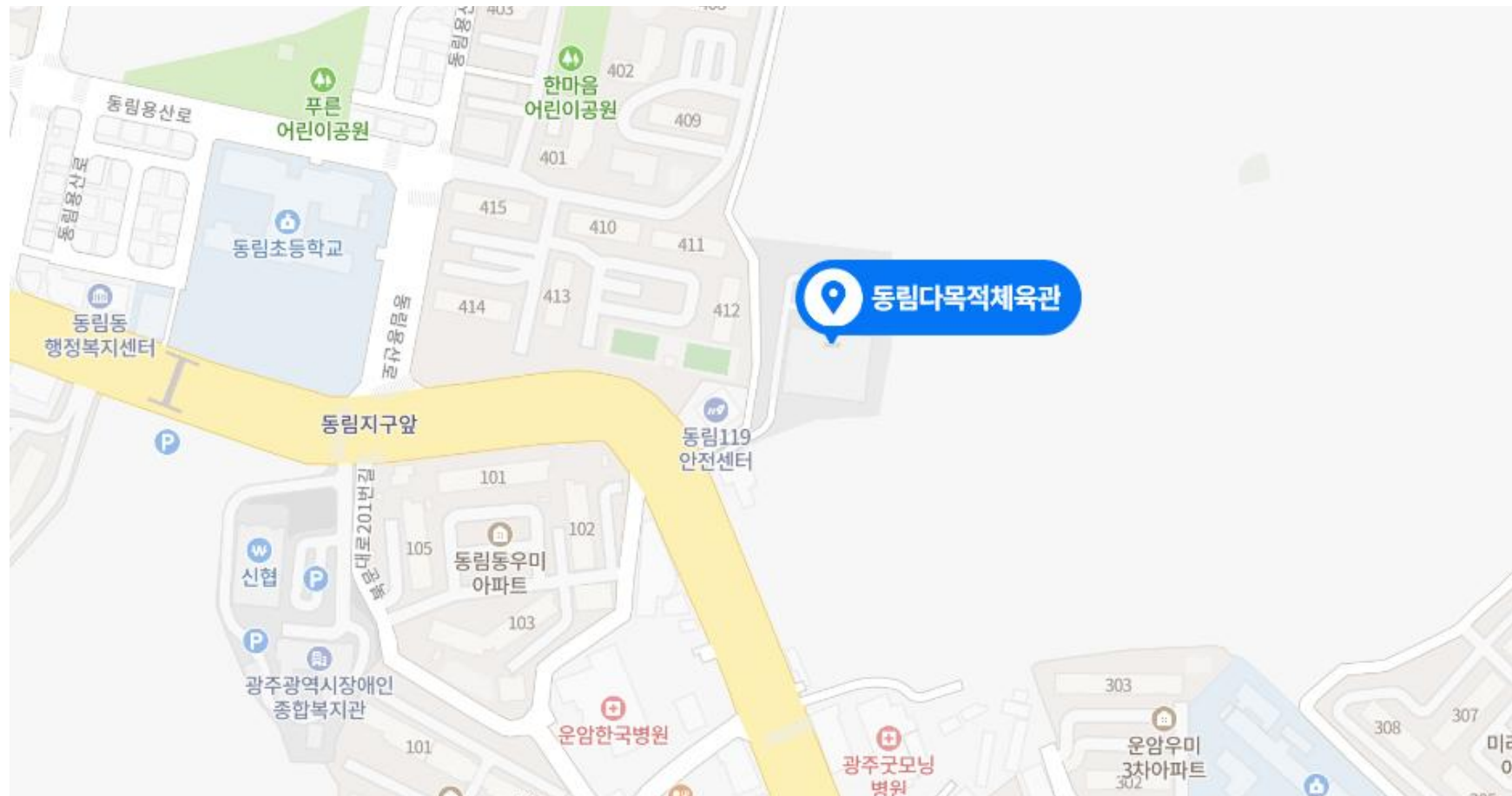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 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체력시험장 안내

□ 시험장소 : 동림다목적체육관(광주 북구 북문대로 200)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 -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안내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별도 시험을 시행을 안내하고자 함.

■ (대 상)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본인의 체력시험
응시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신청기간) 본인 응시 예정일 전일 24시까지

※ 별도 시험 준비 등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최소한으로 한정함.

※ 응시 예정일 전일 24시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응시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응시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시험 응시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① 광주소방본부 채용담당자(062-613-8021)에게 확진 등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 담당자(확인/격리통보)에게도 본인이 시험 응시자임을 알림

※ 응시 예정 지역 내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② 첨부서류 제출(팩스 또는 메일)

■ (첨부서류)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붙임 5-1, 5-2)

◆ 메 일 : sweetysmile@korea.kr ◆ 팩 스 : ☎ 062-613-8019

■ (시험 안내)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장소 및 일정 개별 유선 통보(시험 예정일 前)

■ (유의사항)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방역수칙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 의거

5-1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응시번호	
현 주소지			
격리 기간		관할 보건소	

☐ 제출 서류※ 서류 제출현황 (제출시 ☐에 ‘V’ 체크)

- ① 시험응시 신청서 ☐ (공통)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공통)
- ③ 체력시험 응시가능 의사 소견서 ☐ (확진자용)

상기 본인은

2021년 광주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별도 응시를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별도시험용)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 광주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확진 ·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가 없을 시 수당입금 등이 불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가 없을 시 수당입금 등이 불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질병관리청, 관할 보건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응시자 확진·자가격리 여부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가 없을 시 수당입금 등이 불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5-3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며, 외출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이동 시 반드시 개인차량으로 이동해주시고, 가족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지).
- 가족 차량으로 이동 시 보호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